

청주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가단5884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진천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해진

변 론 종 결 2022. 5. 17.

판 결 선 고 2022. 6. 14.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9. 1.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31,790,2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790,28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하고,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지분의 변론종결일 당시 공동담보가액은 79,492,99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서 B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B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1) 채무자인 B와 수익자인 피고가 형제 관계일 뿐만 아니라, 위 사해행위 당시 B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 관계였다(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들의 부친인 C의 소유였는데, C가 2018. 11. 21. 사망하자 C의 배우자인 D와 B 및 피고가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지분의 매매대금 188,300,000원 중 123,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금출처에 대한 금융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험칙과 통상의 경제관념에 비추어 보아도 거액인 123,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은 이들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3)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이 이 사건 지분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와 같은 거액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매도인의 요구는 통상의 거래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요구인데,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피고가 B의 그러한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가 채무자인 B의 신용상태 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나아갔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든다.

다.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31,790,2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31,790,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성우

별지